

조 정 조 서

사 건 [REDACTED] 손해배상(기)
매매대금

원고, 반소피고 [REDACTED]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반소원고 [REDACTED]

대표이사 [REDACTED]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REDACTED]

출석

피고(반소원고) 및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각 출석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 정 조 항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

급하되, 아래 가.항 기재 돈은 2025. 11. 2.까지, 아래 나.항 기재 돈은 2026. 4. 2.까지 지급한다. 단, 원고는 2025. 11. 2.까지는 아래 가.항 기재 집행권원으로, 2026. 4. 2.까지는 아래 나.항 기재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가 가.항 기재 돈을 기한 내에 전부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항 기재 돈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가.항 및 나.항 기재 집행권원으로 전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가. 먼저, 310,000,000원 중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2.부터 2025. 11. 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위 전체 원리금을 미지급할 경우 나머지 원금 및 이에 대하여 202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나. 나머지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2.부터 2025. 11. 2.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정일인 2025. 6. 2.로부터 7일 이내에 [REDACTED] [REDACTED] 가압류대상 토지 중 [REDACTED] 토지에 관한 가압류 취소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고,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모두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 가압류 대상 토지 중 [REDACTED] 토지에 관한 가압류 취소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며, 제1.의 나.항 기재 돈을 모두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나머지 가압류 대상 토지인 [REDACTED] 토지에 관한 가압류 취소 및 집행해제신청을 한다.

3.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